

## 2023년 기획사업

# ‘지역사회 임시주거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’

## 신청 안내

### 1. 사업개요

<b>사업명</b>	지역사회 임시주거 인프라 구축·지원사업
<b>사업 목적</b>	○ 임시주거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을 통해 다양한 사유로 임시주거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게 단기간 머물 수 있는 임시주거를 제공하고, 원활한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자 함.
<b>사업 방향</b>	<p>○ <b>기본방향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대상 : 갑작스러운 주거위기 상황 혹은 안정적 주거 이동 전 임시주거가 필요한 가구</li> <li>· 단기간의 임시주거 지원을 통해 주거이전이 가능한 경우가 우선</li> <li>☞ <u>정해진 주거 기간 이후 반드시 주거 이전이 가능해야하며</u> 입소가구에 대한 기본적 생활지원 외 서비스 지원은 본 사업에서 제외함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10px; margin: 10px 0;"> <p><b>※ 임시주거 필요상황 예시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코로나19, 수해, 화재 등의 재난재해로 임시 주거지가 필요한 경우</li> <li>- 이동학대, 가정폭력, 긴급출산 등으로 시설 입소가 필요하나 정원 초과 등으로 입소가 어렵거나, 긴급하게 입소가 필요한 경우</li> <li>- (주거)서비스 신청/선정 후 대기가 필요하나 머물 곳이 없는 경우 등</li> </ul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임시주거를 설치, 운영</b></li> <li>· 일부 대상자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쉼터(장애인, 학대, 가정폭력 등)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, 지역에서 주거가 필요한 다양한 상황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임시주거 공간에 대한 확보는 부채하거나 미흡한 상황으로 갑작스러운 주거 상실에 대처할 수 있는 임시주거를 설치, 운영하고자 함</li> <li>· 현재 공공임대주택(장기미임대주택)을 활용한 긴급임시주거 사업이 일부 지역</li> </ul>



	<p>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반지하, 외곽 지역 주택, 오랫동안 공가로 방치되어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주택 등 제공되는 임시주거의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적합한 공간 운영을 위한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u>주거공간의 확보는 LH, SH 등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순위로 하되</u> 필요한 경우 민간임대자원을 활용하여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보증금, 월세 등을 지원</li> </ul> <p><b>- 임시주거를 지역사회 공유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단체 간 협력 및 네트워크 지원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u>특정 대상자의 주거문제에 대한 안정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</u>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와 시점의 주거위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<u>지역사회의 관련 사업 주체 간 협력과 네트워크가 중요함</u></li> <li>· 공간 운영 기관/단체를 중심으로 대상자 연계 및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</li> </ul>
<p><b>주요 사업 내용</b></p>	<p><b>1) 임시주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임시주거 설치·운영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임시주거 마련(공간 마련, 리모델링) 및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: 기 확보된 공간을 용도 변경하여 운영하는 사업, 본 사업을 통해 신규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사업 모두 가능</li> </ul> </li> <li>- 신규공간을 확보할 경우, 최저주거기준 등 안전성·쾌적성 기준을 충족해야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 최저주거기준 : 3인 가구 기준 면적 36㎡이상, 방 2개 이상, 지상층(반지하 제외)</li> </ul> </li> <li>- 대상자별 거주기간은 최대 6개월을 원칙으로 함</li> <li>- 본 사업은 긴급한 주거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을 주 지원 내용으로 하며, 사업 특성상 사례관리나 서비스 지원은 기존의 자원을 활용</li> </ul> <p><b>2) 단체 간 협력 및 네트워크 마련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u>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 간 협력을 통해 임시주거의 운영원칙 및 방향 수립,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며,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</u> 조례제정, 예산 확보 등에 협력</li> </ul>
<p><b>신청 자격</b></p>	<p>○ <b>임시주거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 울산 소재 법인·기관·시설 및 단체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효율적인 임시주거 운영을 위해 유사사업 수행경험, 기관 의지 등을 고려하여 기관 선정 요망</li> <li>- 임시주거 조성 시 지역 내 접근성, 공간의 용도 등을 우선 고려</li> </ul>



	<p><b>제5조의3(배분제외대상)</b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은 이를 배분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</li> <li>2.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</li> <li>3. 정치·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</li> <li>4.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</li> <li>5. 「공직선거법」에 위반되는 경우</li> </ol>
<b>사업 기간</b>	<p>○ 2023년 7월 ~ 2025년 6월 (2년)      ※ 적합한 임시주거 확보를 위해 기관선정 후 1~2개월 동안 준비기간을 둬</p>
<b>사업 예산</b>	<p>○ <b>신청한도 : 기관당 8,000만원 이하 (2년 간)</b>      ※ 신청금액은 심사 및 사업조정 이후 조정될 수 있으며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</p> <p>○ <b>지원가능항목 : 사업비, 관리운영비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사업비 : 공간 확보, 운영,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       (예) 보증금, 월세, 개보수 비용, 집기비품 구입, 네트워크 회의비 등</li> <li>▷ 관리운영비 : 본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간접비용(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)        (예) 출장비, 소모품 구입비 등</li> </ul> <p>※ 본 사업에서는 인건비 지원이 필수가 아니며, 심사 시 필요성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</p> <p>※ <b>보증금 지원 시 한도 : 2,000만원</b>      ※ 보증금, 월세를 제외한 예산기준은 모금회 지침(2023년 예산편성기준)에 의함</p>
<b>신청 기간</b>	<p>○ 2023년 4월 11일(화) ~ 4월 28일(금) 18:00까지</p>
<b>신청 방법</b>	<p>○ 온라인배분신청(<a href="http://proposal.chest.or.kr">http://proposal.chest.or.kr</a>)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</p>

